

우리나라 산업피해 구제제도와 무역위원회(I)

조 석

상공자원부 무역위원회 행정사무관

1. 서언
2. 우리나라 산업피해 구제제도 개관
 - 1) 우리나라 수입관리 체계의 변천
 - 2) 산업피해 구제제도의 개념
 - 3) 무역위원회와 산업피해 구제제도
3. 수출증가에 의한 산업피해구제제도
 - 1) 조사절차
 - 2) GATT Safeguard 제도
 - 3) 우리나라 제도의 특징과 지금까지의 운영실적
 - 4)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언
4.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구제제도
 - 1) 조사절차
 - 2) GATT의 반덤핑제도
 - 3) 우리나라 제도의 특징과 지금까지의 운영실적
 - 4)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서언

지난 '91년 한국전자공업진흥회 및 정보산업연합회에서는 국내의 컴퓨터 주기판(일명 Mother Board) 산업이 대만산 주기판의 수입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하여 동산업의 적절한 구제조치 방안을 강구하던 중, 무역위원회를 통한 산업피해구제 신청을 함으로서 관세율 인하 또는 국내산업에 대한 지수정책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 구제신청을 한 바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산업계에서는 산업피해구제제도는 주로 선진국(특히 미국)에 수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수출에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덤핑제도라는 인식을 가져 왔던게 사실이다.

즉 앨범, 칼라 TV 등 수출호조품목의 경우에도 수출국 생산업체로부터 덤핑제소를 당함으로서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가 덤핑제소를 당하여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상대국의 무서운 수입규제 무기로 인식되어 온 이러한 산업피해구제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주요 선진국에 못지 않게 상세하고도 투명한 절차가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동제도의 활용이 미흡한 것은 우리나라의 무역정책 또는 관세정책상 아직도 약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산업피해구제제도 보다는 간편한 다른 방법을 통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있으나 이러한 산업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인식이 널리 알려져 있지 못한 것도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 산업피해보상구제제도를

산업계에 널리 알려므로서 우리 산업계에서 동 제도를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피해구제제도의 개관, 수입증가에 의한 산업피해구제제도,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제도와 우리나라 제도의 내용과 특징 등을 서술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의 산업피해 구제제도 개관

1) 우리나라 수입관리 체계의 변천

우리나라가 아직 국제수지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GATT(관세 및 무역에 대한 일반협정) 18조(B)항 적용을 받고 있던 시기에는 사전적인 수입관리와 고율관세 등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입의 증대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사전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89년 10월 GATT 국제수지(BOP: Balance of Payment)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GATT 18조 (B)항의 수용을 중단하게 되어 국제수지를 이유로 하는 수입수량 제한조치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고 잔존하는 수입제한 품목의 경우 '97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자유화시키거나 또는 그 수입제한 방법을 GATT의 다른 규정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입제한조치의 중단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국제시장에서의 위상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국제세계에서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름으로 향유하던 제반 특례적 혜택을 마감하고, 국제사회의

위상에 걸맞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현재 진행중인 UR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나라의 평균관세율은 지금보다 더욱 인하되게 될 것이고 많은 품목의 관세를 양허하게 되어 국내시장 개방의 폭은 넓어지고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2) 산업피해 구제제도의 개념

산업피해구제제도는 이론적으로는 여러가지 학설과 개념이 논의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제도” 즉 “국내시장의 개방에 따른 수입자유화, 관세인하, 덤핑공세 등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피해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산업피해구제제도의 개념을 세분하여 보면 구제제도를 발동하는 원인이 되는 “특정물품의 수입”과 구제제도를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국내산업의 피해” 그리고 산업피해구제조치를 의미하는 “공공개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특정물품의 수입”이라는 개념은 우선 산업피해구제제도가 전산업에 걸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물품 또는 특정산업이 대상임을 의미한다. 산업피해구제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상담을 하고자하는 기업중에서는 간혹 산업피해구제제도를 국가경제 차원 또는 거시적 산업정책 차원에서 활용하겠다는 의식을 갖는 경우를 접할 수가 있는데, 산업피해구제제도는 이러한 거시적 산업정책 차원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특정물품 또는 특정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일 뿐임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수입에는 공정무역 관행에 의한 수입과 불공정무역 관행에 의한 수입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공정무역에 의한 수입은 국제경제

註) GATT 18조 (B)항(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수입통제) : 경제상태가 오직 저생활 수준에 있고 개발의 초기단계에 처해있는 계약국은 대외재정상태를 개선하고 경제개발계획의 실시에 충분한 수준의 통화준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수준 통제 가능

력의 임의적 조작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진 단순한 수입증가만을 의미하는 반면 불공정무역 관행에 의한 수입은 덤핑, 정부보조금지급 등에 의해 가격 경쟁력이 임의적으로 조작된 물품의 수입을 의미한다.

공정무역 관행에 의한 산업피해구제제도는 GATT 제19조의 세이프가드(Safeguard)조항으로 국제 규범화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수입증가에 의한 산업피해구제제도가 있으며, 불공정무역 관행에 의한 산업피해구제제도는 GATT 제6조와 상계관세 Code 및 반덤핑 Code로 국제 규범화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에 의거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제도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국내산업의 피해”에 있어서는 우선 국내산업이 어디까지인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나오는 데 이것은 수입된 특정물품과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라고 개념적으로 정의는 되지만 현실적으로 범위 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서, 대부분의 국가는 범위 결정의 내부적 준거를 가지고 개별 사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관행이다.

피해의 개념은, 경미한 피해는 포함되지 않으며 심각한 또는 실질적인 피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피해의 정도에 대해서는 공정무역 관행에 의한 수입의 경우와 일반적으로 공정무역 관행에 의한 수입의 경우에는 더 높은 정도를 의미하는 “심각한(Serious) 피해”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불공정무역 관행(덤핑, 보조금)에 의한 수입의 경우에는 “실질적(Material) 피해”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추상적 개념으로 표현된 “심각함” 또는 “실질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주로 국내산업의 각종 지표(생산, 판매, 재무지표 등)의 추세 분석을

통하여 산업의 상태분석과 수입과의 인과관계를 보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또한 “피해”의 개념에는 과거에 존재했던 피해 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피해의 가능성 즉 피해의 위협(Threat of Injury)과 아직 확립과정에 있는 산업확립의 지연(Retardation)도 포함시킬 수 있는 데 이러한 피해 위협이나 확립지연은 충분한 증거가 없이는 개념의 자의적 확대가 가능하므로 그 발동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세째, “공공개입”의 개념은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모든 규제 및 지원조치를 통칭한다. 이러한 공공개입은 덤핑, 보조금 등 불공정무역의 관행에 의한 수입의 경우에 주로 수입품의 가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반덤핑관세(덤핑방기관세) 또는 상계관세라는 관세인상의 방식을 취하게 되며, 공정무역 관행에 의한 수입의 경우에는 관세인상 뿐만 아니라 각종 비관세장벽 또는 관련산업의 구조조정 등에 대한 정부지원 등의 개념도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산업피해구제조치를 시행하는 데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산업피해구제조치가 산업, 무역정책 등 국가의 주요 경제정책의 기초와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실시되어야 하나 개별 산업에 대한 정책이라는 산업피해구제제도의 고유한 성격때문에 거시경제정책과의 조화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설사 그러한 조화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당초의 구제조치를 발동시킨 요건과 원인에 비추어 과도한 공공개입의 성격을 갖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조치만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각 국가에서는 당초에 제기된 산업피해에 비하여 과도한 구제조치가 실시되는 등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

3) 무역위원회와 산업피해 구제제도

한국무역위원회(KTC : Korean Trade Commission)는 '87년 7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상공자원부(당시 상공부) 장관의 자문기관으로 발족하였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89년 우리나라가 GATT의 BOP 조항(18조 B항)을 졸업하면서 사후적 수입관리제도로서의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90년 4월에는 무역위원회를 준사법적 행정위원회(합의제 행정기구)로 확대 개편하였다.

즉 무역위원회는 상공자원부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대외무역법에서 무역위원회에 부여한 기능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산업피해 유무에 대해서는 준사법적 절차에 의해 조사, 판정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조직이다.

무역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는 바, 첫째 수입증가에 의한 산업피해 유무의 판정, 둘째 덤핑 또는 보조금을 지급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유무의 판정, 세째 지적재산권의 침해

물품 수입 등 불공정수출입 행위의 조사 및 제재 건의, 그리고 국제무역 관련 각종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피해 등을 조사하기 위한 무역조사실을 상설기관으로 두고 있다.

무역조사실은 조사실장(1급) 및 산업조사관(국장급) 그리고 4개 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조사실 업무 총괄 및 산업피해구제제도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총괄과, 공산품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피해조사 1과, 농축산물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피해조사 2과, 그리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불공정수출입조사과 등이 있다.

발족한 이래 '93년 4월 현재까지 무역위원회가 수행한 산업피해조사는 31건으로 이중 수입증가가 22건, 덤핑수입이 9건이며, 현재는 2건에 대한 덤핑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EC 원산지 세미나 개최

EC나 동남아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업체는 현지부품 조달과 EC GSP 수혜기준 등 EC가 규정하고 있는 각종 원산지 기준의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반덤핑 뿐만 아니라 현재 더욱 강화되고 있는 우회방지 규정과 관련있는 것으로 해외진출 업체의 경영전략에 직접 영향을 주게되며 또한 해외진출전에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관심있는 업체는 동 세미나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1993. 6. 4(금) 14 : 00~17 : 00
- 장소 : 서울 상공회의소 2층 회의실
- 연사 : EC 통상변호사(Mr. Vermulst)

- 주최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 참가비 : ◦교재비 ₩10,000(교재 당일배포)
◦통역제공 ◦선착순 70명 접수
- 주요내용
 - 원산지 결정방법
 - EC 일반원산지
 - GSP 원산지
 - 특혜 무역협정 원산지
 - Case Study
- ※ 참가신청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진흥회 국제부 통상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TEL : 555-6187/555-4291)